



# 행정 명령 110

## 다음을 제외하고 모든 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:

- COVID-19 필수 직원의 자녀들을 돌보도록 아동 및 가족부(DCF)에 등록된 시설
- 5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 기반 시설
- 군 기지와 같은 연방 자산에 위치한 시설

아동 보육이 필요한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해당 카운티의 보육자원 및 소개청 [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Agency](#)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. CCR&R은 사용 가능한 보육 옵션 및 보조금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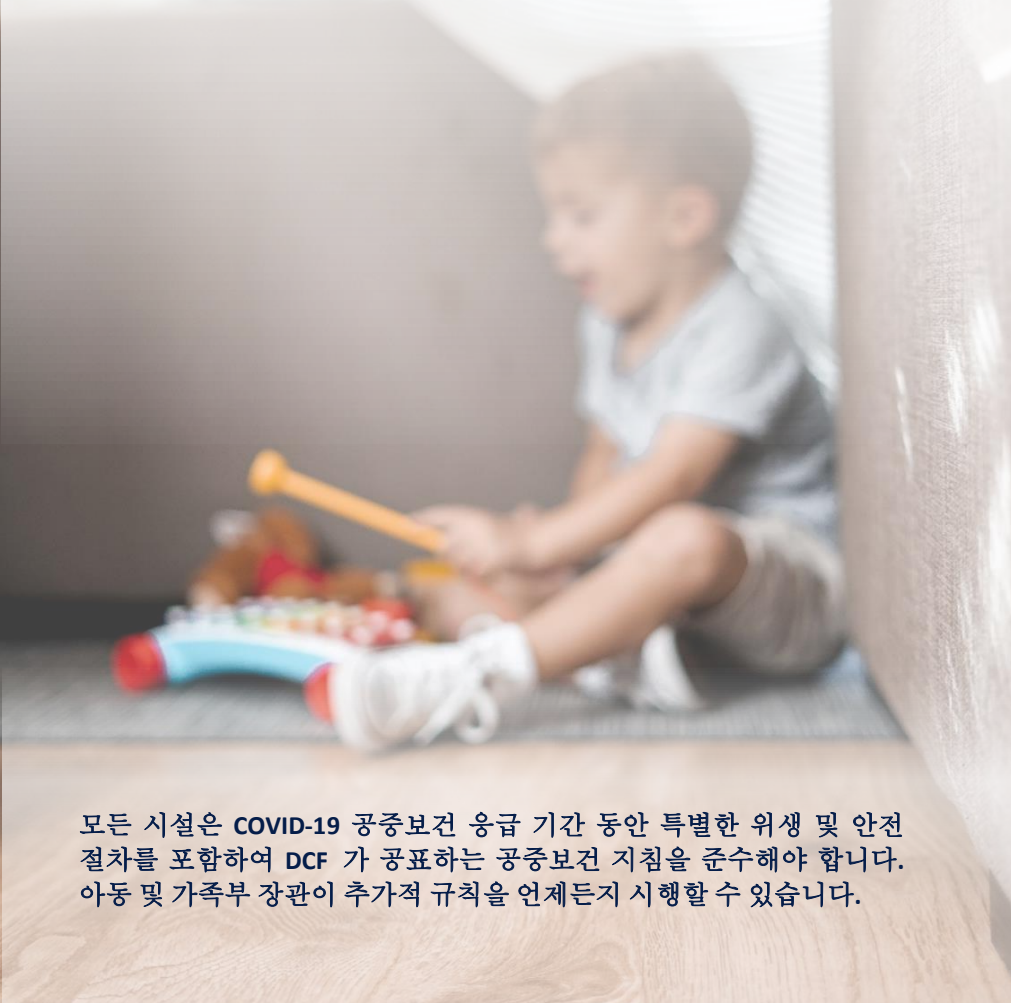
COVID-19 필수 직원의 자녀를 돌보는 보육시설을 새로 열거나 기존 시설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육시설 운영자는 뉴저지 DCF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 새로운 시설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에 대한 입증된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운영을 시작하도록 허가될 것입니다.

다음을 방문하십시오:

[www.nj.gov/dcf/coronavirus\\_licensed\\_childcare.html](http://www.nj.gov/dcf/coronavirus_licensed_childcare.html)

## COVID-19 필수 직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:

- 의료 시설 그리고 자택 건강 및 행동 건강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;
- 법 집행관,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직원 그리고 교도소 직원;
- 2020년 4월 1일 이후 운영되는 응급 보육시설에 고용된 개인;
- 공동 주거 시설 및 보호소 직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필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;
- 아동보호 서비스 종사자, 아동복지 종사자, 가정위탁 종사자, 실업보상 처리 직원 및 보건소 직원을 포함하여 자택에서 근무할 수 없는 필수 공무원;
- 행정 명령 제 107호(2020) 및 차후 관리 명령에 의해 정의된 필수 소매사업에서 근무하는 DCF의 장관이 정의한 바와 같은 특정 주요 근로자.



모든 시설은 COVID-19 공중보건 응급 기간 동안 특별한 위생 및 안전 절차를 포함하여 DCF가 공표하는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 아동 및 가족부 장관이 추가적 규칙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.